# 대 전 지 방 법 원

# 판 결

사 건 2013고정5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

피 고 인 소○○ (86\*\*\*\*-1\*\*\*\*\*), 대학생

주거 대전 동구 이하 생략

등록기준지 대전 중구 이하 생략

검 사 윤중현(기소), 윤인식(공판)

변 호 인 변호사 박현래(국선)

판 결 선 고 2013. 5. 22.

# 주 문

피고인을 벌금 1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# 이 유

### 범 죄 사 실

피고인은 2012. 9. 말경 대전 동구 효둥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, 아이디 'cck\*\*\*'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본디스크(http://www.bondisk.com)에 접속한 후 게

시판에 아동·청소년 또는 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을 '(궁극의근X상X)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!!'이라는 내용으로 설명하며 게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려 받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.

#### 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
- 1. 이 법원의 검증결과

#### 법령의 적용

## 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2. 12. 18.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제8조 제4항(벌금형 선택)

# 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, 제69조 제2항

#### 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# 신상정보 제출의무

피고인에 대하여 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,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####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

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은 청소년이 아니고, 청소년으로 명백히

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이 법원의 검증결과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,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을 게시하며 "(궁극의근X상X)아빠몰래엄마와여동생을!!"이라고 이 사건 동영상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였고,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으로 연출된 여자가 그녀의 오빠와 성행위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므로, '아동·청소년으로인식될 수 있는 사람'이 등장하는 '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'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, 해당 인물이 실제 성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.

따라서,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판사 이종	록
-------	---